

강원관광대학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4장(편입학, 재입학 포함) 중 제 18조 (편입학) 및 제 19조(전과)에 의거, 편입학생 또는 전과자의 전적교 및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(성적)은 공통된 범위내에서 최저학점(성적)을 인정하여 효율적인 성적관리로 잔여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 2 조 (인정기준) ① 교양 및 전공과목 : 전적교 및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 대학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인정학점을 공제한 나머지 교과목의 학점은 전적교(전적학과)의 수료학년에 따라 별도로 본 대학에서 필수과목의 제외한 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전적교(전적학과)에서 이수한 학점단위 및 성적평가 표시가 본 대학과 상이할 때는 본 대학 교과과정에 맞추어 환산처리 한다.

④ 학기당 2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없으며 전적교 및 전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.

⑤ 성적 사정은 학과장의 추천(서식 1)으로 교무회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인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